

의안번호	2210823
의 퇴 인	김예지의원
회 답 일	2025.8.20.
추계번호	25B317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둠	의무규정
2	안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38조의2(지반침하 신고 등)	제1항 ¹⁾ 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43조의2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2에 따른 신고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미대상) 국토교통부 내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이 이미 운영 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구성</th><th>자문위원</th></tr> </thead> <tbody> <tr> <td>1</td><td>제1기 자문단('18년 ~ '20년)</td><td>15명</td></tr> <tr> <td>2</td><td>제2기 자문단('20년 ~ '22년)</td><td>15명</td></tr> </tbody> </table>	구분	구성	자문위원	1	제1기 자문단('18년 ~ '20년)	15명	2	제2기 자문단('20년 ~ '22년)	15명
구분	구성	자문위원									
1	제1기 자문단('18년 ~ '20년)	15명									
2	제2기 자문단('20년 ~ '22년)	15명									

1) 안 제38조의2(지반침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3	제3기 자문단('22년 ~ '24년)	15명
		4	제4기 자문단('24년 ~ '26년)	18명
2	안 제12조 (지반침하안전위원회)	• 미대상 : 17개 시·도 중 경상남도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필요하나, 경상경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최근 5년간 개최일 수는 연평균 1회, 위원은 평균 10명([참고자료]에서 확인)		
3	안 제38조의2 (지반침하 신고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43조의2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상세 사유

□ 지반침하 신고 등(안 제38조의 2)

-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반침하 신고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되는 지반침하 신고 횟수, 위중도, 긴급 보수의 범위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현시점에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3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 신고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른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은 현행 「지하안전정보체계」 ([참고자료 2] 참조)의 기능개선을 통해 운영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으나, 현행 지하안전정보체계 내에 지반침하 신고 등 기능 구축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구분	위원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서울특별시	10	1	3	1	—	1	2
부산광역시	10	—	—	1	1	1	1
광주광역시	10	1	1	2	1	1	1
대구광역시	10	1	1	1	1	1	1
대전광역시	10	1	1	1	1	—	1
울산광역시	9	1	1	1	1	1	1
인천광역시	9	1	1	1	1	1	1
세종특별시	9	1	1	1	1	—	1
경기도	10	1	1	1	1	1	1
강원특별자치도	10	1	2	1	1	2	1
전북특별자치도	11	—	1	2	—	1	1
전라남도	10	1	1	1	1	—	1
충청북도	9	1	1	1	1	1	1
충청남도	10	1	1	1	—	2	1
경상북도	10	1	2	—	1	1	1
경상남도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9	1	—	2	1	1	1

[참고자료 2]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시스템 개요

-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 시행 시 거쳐야 하는 지하안전평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지하안전관리 정책 활용, 지반침하 자료·통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관리
- 지하안전점검 관리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리
- 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 지반침하사고 관리

< JIS 구성도 >



□ 사업비 : 2025년 6.15억원

- 시스템유지관리비(2.24억원), 시스템 위탁운영비(3.24억원), 시스템기능개선비(67백만원)